(건축-007) 업무시설 공사현장 안전난간대 설치 중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생명 ○○사옥 신축공사				
사고일시	2019년 6월 17일(월) 14:20분경		기상상태	맑음	
소재지	부산시 동구	사고 종류	기타, 추락		
구조물 손실	-	인적피해	사망 1명	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	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업무시설

○ 공사면적 : 건축면적 931㎡, 연면적 18,408㎡

○ 공사규모 : 지하 6층, 지상 15층○ 공사기간 : 2017.12~2020.6

2) 사고경위

○ 지하 3층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의 바닥 합판을 옮기는 과정에 작업발판이 기울어지면서 근로자가 지하 6층으로 추락함

3) 사고원인

-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하여 지하3층의 작업발판 상부에 올라가서 바닥 합판을 옮기던 중 작업 발판이 기울어지면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됨
- 작업발판의 한쪽은 하부에서 시스템비계로 지지하고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후속작업을 위하여 시스템비계가 해체되어 지지력이 없는 상황이었음

나. 재발방지대책

- 비계 및 작업 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.
-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,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한다.
-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하여야 한다.
-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,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